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·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,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, 과학기술·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,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 간 소관 재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0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8항제13호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나목·다목·마목·아목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가목·나목·마목·아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자목·타목·너목·더목 및 버목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자목·타목·거목8)부터 9)까지·너목·러목 및 서목”으로,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, 기후에너지환경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가목·사목·차목·파목·하목 및 서목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다목·사목·차목·파목·하목 및 더목”으로, “여성가족부”를 “성평등가족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라목·카목·러목 및 머목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라목·카목·머목 및 버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“환경부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 가목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제2호 나목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의2(사회재난실) ① ~ ⑦ (생략)	제19조의2(사회재난실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⑧ ----- ---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금융통신등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나목·다목·마목·아목 및 어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금융위원회, 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법무부, 우주항공청 또는 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	13. -----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제2호가목·나목·마목·아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4. ~ 26. (생략)	14. ~ 26. (현행과 같음)
⑨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⑨ ----- -----.
1. 국토산업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	1. -----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

1의3 제2호자목·타목·너목
·더목 및 버목에 따른 사회
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
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
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산업통
상자원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
통부,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
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
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. 이하
같다)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
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

2. ~ 13. (생략)

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
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보건사회재난(「재난 및 안
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
1의3 제2호가목·사목·차목
·파목·하목 및 서목에 따른
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
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
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교육
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
부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
또는 질병관리청이 재난관리
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
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대

1의3 제2호자목·타목·거목
8)부터 9)까지·너목·러목
및 서목-----

----- 산업통
상부, 기후에너지환경부----

2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⑩ -----
-----.

1. -----「재난 및 안
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
1의3 제2호다목·사목·차목
·파목·하목 및 더목-----

----- 성평등가족
부 -----

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
관한 사항

2. ~ 13. (생략)

⑪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은
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농축산해양재난(「재난 및
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
표 1의3 제2호라목·카목·러
목 및 머목에 따른 사회재난
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
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
난 유형으로서 외교부, 농림축
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또는 해
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
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.
이하 같다)에 대한 대응 활동
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
항

2. ~ 13. (생략)

⑫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은 다
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환경산림재난(「재난 및 안
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
1의3 제2호바목, 같은 호 거
목1) 및 3)부터 7)까지, 같은
호 저목부터 커목까지의 규정

2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⑪ -----
-----.

1. ----- 「재난 및
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
표 1의3 제2호라목·카목·머
목 및 버목-----

2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⑫ -----
-----.

1. -----

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, 국방부, <u>환경부</u>, 국가유산청 또는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. ~ 13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13. (현행과 같음)
--	---